

의안번호	2204189
의 퇴 인	정준호의원
회 답 일	2024. 9. 25.
추계번호	24C3885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정의) 및 제18조의2(문화마을의 지정)	“문화마을”이란 문화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소규모 문화시설 및 문화업종의 육성, 마을 고유문화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등을 통하여 주민의 정주의식 향상과 마을의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함(안 제2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문화마을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8조의2제1항) － 마을단위로 문화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려는 지역 － 마을단위로 특성화된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문화예술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개최되는 지역 － 그 밖에 유형·무형의 문화자원이나 문화적 특성 보존을 위하여 문화마을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마을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8조의2제2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조(정의) 및 제18조의2(문화마을의 지정)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사유

- 개정안과 같이 문화마을을 새로이 정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문화마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정된 문화마을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 그에 따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 발생을 예상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문화마을이 지정된 이후 결정되는 것으로서, 현시점에서는 문화마을의 지정 규모와 지정된 문화마을에 대한 지원수준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으로 문화도시 지정 근거가 마련된 이래 24개 문화도시가 지정되었고, 관련 예산편성 및 지자체 국비 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1] 최근 5년간 문화도시조성 사업 예산 현황

(단위: 억원)

연차별 예산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문화도시 조성	90	184	274	364	389.5
문화도시 조성 지원 (지자체 경상보조)	90 (7개×12.86억원)	180 (12개×15억원)	270 (18개×15억원)	360 (24개×15억원)	360 (24개×15억원)
문화도시 관리 및 홍보 (민간경상보조)	—	4	4	4	3.5
대한민국 문화도시 앵커사업 시범지원(지자체 경상보조)	—	—	—	—	26 (13개×2억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표 2] 최근 5년간 문화도시조성 사업 관련 지자체 지원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지정 연도	지자체	2020	2021	2022	2023	2024
1차 문화 도시 (7곳)	'19.12.	부천시	1,286	1,500	1,400	1,500	1,500
		서귀포시	1,286	1,500	1,600	1,600	1,500
		영도구(부산)	1,286	1,400	1,400	1,500	1,500
		원주시	1,286	1,500	1,600	1,500	1,500
		천안시	1,286	1,400	1,500	1,500	1,500
		청주시	1,286	1,600	1,500	1,600	1,500
		포항시	1,286	1,600	1,500	1,500	1,500
2차 문화 도시 (5곳)	'21.1.	강릉시	—	1,500	1,500	1,400	1,500
		김해시	—	1,500	1,400	1,500	1,500
		부평구(인천)	—	1,500	1,500	1,500	1,500
		완주군	—	1,500	1,600	1,600	1,500
		춘천시	—	1,500	1,500	1,600	1,500
3차 문화 도시 (6곳)	'21.12.	공주시	—	—	1,500	1,400	1,500
		목포시	—	—	1,500	1,500	1,500
		밀양시	—	—	1,500	1,600	1,500
		수원시	—	—	1,500	1,500	1,500
		영등포구(서울)	—	—	1,500	1,200	1,500
		익산시	—	—	1,500	1,500	1,500
4차 문화 도시 (6곳)	'22.12.	고창군	—	—	—	1,500	1,500
		달성군(대구)	—	—	—	1,500	1,500
		영월군	—	—	—	1,500	1,500
		울산광역시	—	—	—	1,500	1,500
		의정부시	—	—	—	1,500	1,500
		칠곡군	—	—	—	1,500	1,5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지출 증가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이제정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제정	02-6788-3739	jejeong2@na.go.kr